

14-하-3.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대학

【공시시기】 : 2023년 10월

【공시내용】 : 대학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

【공시양식】 :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정보보호팀의 제출 양식을 따라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2023년)

정보보호 수준진단 등급	
정보보안	개인정보보호

■ 작성지침

【정보보호 수준진단 관련 근거】 : 정보보안 수준진단(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5조(수준진단), 76조(자체진단), 77조(현장실사)),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(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(제33조(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)))에 의거하여 대학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실시 결과

【정보보안】 : 당해연도 대학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점수에 대한 등급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

※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ISMS/ISMS-P) 획득 시 ISMS(범위, 유효기간), ISMS-P(범위, 유효기간)으로 표기

【개인정보보호】 : 당해연도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에 대한 등급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

※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ISMS-P) 획득 시 ISMS-P(범위, 유효기간)으로 표기

【작성방법】 정보보호 수준진단 관련 실시 현황 작성 방법

- “미실시”: 당해 연도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미실시
- “미흡”: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70점 미만
- “보통”: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70점 이상 ~ 80점 미만
- “우수”: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80점 이상
- “ISMS(범위, 유효기간)”: ISMS 인증을 받은 경우
- “ISMS-P(범위, 유효기간)”: ISMS-P 인증을 받은 경우

※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에 대학이 포함됨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경우 표기 필요
 (예: ISMS(학사, ~2024. 12. 31), ISMS-P(학사, ~2024. 12. 31))

■ 참고사항

-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는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 종합관리시스템에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
- 교육부 수준진단 대상이 아닌 경우 미 공시
- 수준진단 대상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(단,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수준진단 자가점검 결과를 제출한 대학은 포함)
 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(학교의 종류)에 명시된 고등교육기관: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“원격대학”), 기술대학, 각종학교
 - 「고등교육법」 제30조(대학원대학):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(학위과정의 통합)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(이하 “대학원대학”)
- 수준진단 절차: 대학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자체진단 후 교육부 담당부서의 현장 확인
- 수준진단 횟수: 연 1회